

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한쪽 손 장애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의 중장애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회 생활도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권익운동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에 의해 수감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우리는 수감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재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양변기 하나조차 없는 대구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 수감자 복지 이전에 일반재소자 복지 자체도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재소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나 논의 자체가 현 실정상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현 주소임을 감안할 때 과연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선 법조항의 불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째,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보장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설치대상 공공시설에서 빠져있는 교정시설을 공공시설에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에는 교정시설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르는 편의보장법에 교정시설이 빠져있는 바, 이러한 시설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 전용 교정시설을 건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주에 장애인전용 교도소가 있지만 이는 현 상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장애인 전용 교정시설 및 현재 시설에도 장애인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수용상 우려

될 수 있는 장애인 재소자 인권침해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복지당국과 법무부와의 유기적 협조입니다.

법무부라는 그 성격상 복지정책의 고려는 자칫하다간 간과되기 쉽습니다.

복지당국은 사회 곳곳 어디라도 사각에 몰릴 수 있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법무부와 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추진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는 장애인들의 권리 찾기의 목소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그 목이 쉴 정도의 부르짖음에도 주변의 관심은 너무나 냉대하기만 합니다.

현재 계속 고민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각종 장애인 지원대책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지며, 복지 정책수립의 일선에 있는 저로서도 간과된 곳이 없나 하는 움직임으로 계속 바로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 스스로도 당연한 권리 찾기 운동을 지속하여 주시고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모두 도와서 나아지는 장애인 환경을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1. 대구구치소

1. 장애인들을 수감하기 위한 방이 따로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2. 장애인들을 수감하기 위한 방이 별도로 있다면
① 세면대에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②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습니까?
가. 미끄럽다() 나. 조금 미끄럽다() 다. 적당하다(○) 라. 전혀 불편 없다()
③ 변기는 지지대가 설치된 변기로 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④ 방이 장애인들이 지내기에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가. 협소하다() 나. 다소 협소하다() 다. 적당하다(○) 라. 전혀 불편없다()
3. 장애인 의수족은 방안에서 착용할 수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4. 조사 또는 재판 시 장애인들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둘 다 하지 않는다()
* 장애인들에 대한 계구 사용 여부는 검사 조사시에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 및 부위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판 시에는 정상인도 중형 예상자를 제외하고 수갑과 소송을 모두 하지 않는다.
5. 정신 지체 또는 정신 장애인(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은 별도로 수감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6. 기타 장애인 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민원실에는 신축 당시 전용 화장실, 경사로, 전용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이 설치되었고 2000년도에 점자 블록, 음향 유도기, 전자 표출기(전광판), 피난 경보 설비, 점자 표시판, 전용 접수대 등을 추가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음
- 수용 사동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운행중에 있으며, 휠체어 2대, 목발 등을 비치하고 4개의 거실을 장애자용으로 지정하여 일반인과 분리 수용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 거실로 지정된 곳은 향후 장애자 전용 화장실 및 세면대를 조속히 설치하여 장애인 처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임

2. 대구교도소

1. 장애인들을 수감하기 위한 방이 따로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2. 장애인들을 수감하기 위한 방이 별도로 있다면
 - ① 세면대에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 * 금년(2001년)상반기 중 거실 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공사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화장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검토중에 있음
 - ②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습니까?
가. 미끄럽다() 나. 조금 미끄럽다() 다. 적당하다(○) 라. 전혀 불편 없다()
 - ③ 변기는 지지대가 설치된 변기로 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 ④ 방이 장애인들이 지내기에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가. 협소하다() 나. 다소 협소하다() 다. 정당하다(○) 라. 전혀 불편없다()
3. 장애인들을 수감하기 위한 방이 별도로 있지 않다면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4. 장애인 의수족은 방안에서 착용할 수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5. 조사 또는 재판 시 장애인들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둘 다 하지 않는다()
6. 정신 지체 또는 정신 장애인은 별도로 수감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요(○)
- *정신지체자들만 별도 수용시 교정사고의 발생 빈도가 많음.
7. 기타 장애인 복지, 편의시설 확충에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준공된지 30여년이 된 구건물로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용자의 편의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계속 검토중에 있음. 끝

교도소·구치소는 장애인 '인권사각'

**정상인과 함께 수용
놀림·모욕당하기 일쑤
의수족도 사용못해 곤욕**

「교도소나 구치소는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인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ㄱ씨. 한쪽 다리가 없는데도 감방에서 의수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일반 변기에 쪼그려 앉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ㄴ씨. 지난해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발길을 재촉 당하느라 큰 곤욕을 치렀다.

최근 출소한 ㄷ씨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병신」등의 폭언을 들으며 모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일반 재소자와 같은 방에 수감되는 등 교정시설에서 장애인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장애인들의 인권 관련 고발·상담 230여건 중 12%인 24건이 구치소, 교도소, 검·경, 파출소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들이 민·형사 사건 발생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 가해자로 몰리고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 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이달부터 교정시설 및 수사기관에서는 장애인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우선 지난 10일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의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개 기관에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설치를 위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16일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도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또 대구지역 파출소, 경찰서, 지방경찰청 등의 초동수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장애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제보(954-0173)를 받고 있다.

송덕준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상담실장은 「지난 98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지만 교정시설만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이 신체적 핸디캡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 kbg@imaeil.com

2001년 1월 17일

장애인 재소자 인권은 없나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물론 경찰서 유치장 등에 장애인수감자를 위한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장애인 재소자들이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정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몸이 불편해 어눌한 동작을 하면 교도관들로부터 신체일부를 지칭해 비하하는 욕설을 듣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수동)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장애인협회와 장애인인권협의회에 고발된 인권관련 상담 중 전체의 12%에 달하는 24건이 구치소나 교도소는 물론,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거나 수감중에 일어난 불편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장애인이 폭력관련 범법행위를 저질러 구치소에 입감될 경우 폭력혐의로 수감된 미결수 등이 있는 감방(일명 폭력감방)에 함께 수용돼 일반재소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치소에서 수감하는 과정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을 구별해 분리 수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정시설은 물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다리가 불편하거나 다리절단장애인의 경우 실내에서는 의족을 착용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일반 정상재소자들이 사용하는 일반 번기에 쪼그려 앉아 용변을 봐야 하고, 얼굴을 씻는 세면장도 정상인들에게나 맞도록 돼있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구구치소의 경우 아침마다 화장실 타일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구내방송이 나올 정도로 미끄러운 화장실에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용변을 보는

**구치소·교도소 편의시설 태부족
장애인체 비하성 발언 다반사
의수족 상태에서 포승 묶고 수감
"정부 조사 나서 개선책 마련을"**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지팡이나 의수족을 한 상태에서 포승줄로 묶는데다, 수감마저 채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며, 조금이라도 동작이 굼뜨면 장애인들 지칭하는 욕설을 해대는 등 장애인들이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윤수동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장은 "98년 4월 발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교정시설 가운데 면회실 등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만 그럴 듯 하게 꾸며졌을 뿐 정작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감방 등 실내에는 그러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입삼는 수가 많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는 대구·경북지역 교도소와 대구구치소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된 질의서를 최근 발송했으며, 앞으로 한국지체장애인중앙회와 연계해 장애인들이 경찰서, 교정시설 등에서 불편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수집, 백서를 발간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등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오경엽 기자] kenny@yeongnam.com

2001년 1월 17일

구치소 수감 장애인은 인권도 없는가?

**의수족도 착용 못해 일상생활 심각한 제약받아
좌변기 없어 고통, 수화통역사는 한 곳도 없어**

대구지역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등 교정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수동·이하 지장협)에 따르면 지난 한해 장애인 인권위원회를 통해 고발·접수된 인권관련상담 중 전체의 12%에 달하는 24건이 파출소, 경찰, 검찰,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사건 발생시 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기 일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장협 노세중 사무국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하다"면서 "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지만 교정시설에서는 면회실과 같은 밖에서 보이는 시설만 그럴듯하게 꾸며 놓았을 뿐 정작 감방에서는 의수족도 착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노국장은 또 "의수족을 착용한 장애인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동장이 굼뜨다는 이유로 욕을 먹거나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최근에는 술집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경찰로부터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한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방내에서 의수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인권침해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절단장애인은 의수족도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재소자에 맞춘 세면시설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겨우 세면을 하고, 좌변기가 아닌 일반 번기에 쪼그리고 앉아 용무를 봐야해 일상에서의 고통이 몇배나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장협에서 대구교도소를 비롯,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구치소에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세면대와 화장실의 편의시설은 물론 수화통역사를 배치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구별을 '신체나 대화로 안다'고 답변한 곳이 많아 형사사건 발생시 정신지체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구=김명희 기자]

2001년 2월 2일

교도소내 장애인시설 첫 조사

정신장애인 분리수감·화장실 등 점검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는 대구교도소와 대구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구지장협은 교정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실태조사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장협은 5일 오전 11시부터 지역 출신 이원형의원(한나라당)과 함께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를

를 방문, 교정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점검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구지장협이 이원형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

지장협은 정신장애인을 일반 수형자들과 따로 두는지 여부, 화장실·세면대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지장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교정시설의 실태보고서를 작성, 국회의원들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관련 법안입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2001년 7월 4일

“장애인 재소시설 필요”

이원형의원 실태조사

지역 교도소와 구치소가 장애인 재소자 인권 및 복지대책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의 교정시설내 장애인 재소자 복지와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이 대부분 낙후되고 과밀화된 상태에서 장애인 재소자복지는 아주 열악했으며 대책마련조차 근본적으로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대구구치소의 경우 시설초기에 장애인 재소자에 대한 고려 없이 건물이 지어졌으며 장애 재소자를 위한 별도예산과 장애인 전담교정시

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교도소는 시설이 노후화 돼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재소자의 경우에도 복지실태가 매우 열악했으며 장애인 별도관리가 여건상 불가능해 일반 재소자와 통합 수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 시설요건으로 정해진 점자블럭, 점자안내판, 스피커 등 장애인 기본편의시설조차 전혀 마련돼있지 않았으며 정신병력이 있는 재소자 등 특이 재소자도 장애인으로 별도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법무부 및 국회 해당 상임위와의 협의를 거쳐 교정시설내 장애 재소자 제반여건을 위한 예산편성과 장애인 전담교도소 등을 설립 근거마련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수 기자] jin@kyib.co.kr

2001년 7월 10일

대구구치소·교도소 장애인 재소자 ‘인권사각’

‘일반’ 과 함께 수용 편의시설 미비

대구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정인지체장애인의 수감인원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장애인 재소자의 특성을 감안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이 지난 5일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장애인 재소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교정시설의 답변자료에서 드러났다.

대구교도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각장애인 등 53명의 장애인이 수감중이나 별도 관리시설 없이 일반 재소자와 통합 수용돼 있다. 또 폭행과 따돌림이 예상되는 정인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인원

조차 파악하지 않아 이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필수요건인 장애인 편의 시설의 경우 대구교도소는 좌식변기를 갖춘 곳이 한 곳도 없어 올해내 2곳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각 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은 전혀 갖추지 않았다.

대구 구치소는 건물이 최근에 지어져 음향유도기를 비롯해 경사로, 휠체어, 장애인용 거실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으며, 직원들에게 수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체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건물이 장애인 재소시설에 대한 배려 없이 지어졌으며 수용시설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영 기자] younger@yeongnam.com

2001년 7월 10일

장애인 재소자 불편 별도 편의시설 없어

대구지역 교정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형의원(한나라당)이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 재소

자 인권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정시설이 오래된데다 수용인원마저 넘쳐 장애인 재소자에 대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없었다는 것. 대구교도소의 경우, 장애인과 일반재소자를 통합수용하고 있었고 공공기관의 시설요건인 점자블록·점자안내판·점광판·스피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2001년 7월 10일

“교도소에 장애인 시설 왜 없나?”

이원형의원, 대구 장애인재소자 실태조사
“법령서 제외 이해안돼...전국조사 나설터”

“관공서등 공공시설에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교도소와 구치소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에서 빼놨어요. 재소자와 면회 온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변호사 가운데도 장애인이 적지 않은데 왜 예외를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교도소 장애인 시설을 처음으로 조사한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장애인 재소자들이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걸 보고 놀랐다”며 “교도소에도 최소한의 장애인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인 그는 대구지체장애인 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5일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장애인재소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는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도관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데 그게 전혀 안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대구교도소와 구치소쪽으로부터 각각 오는 8월과 10월까지 장애인용 화장실은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또 시각장애인용 안내판이 없고 교도소 안에 수화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대구교도소 재소자 2700여명 가운데 약을 먹는 환자가 장애인을 포함해 하루 400~500여명이 이르는데 의료시설이 허술하고 무엇보다도 약사가 1명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대구교도소에는 75명, 대구구치소에는 23명의 장애인들이 각각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구교도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장애인 재소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곧 전국 교도소를 상대로 장애인 재소자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2001년 7월 11일

“어둠을 떨치고 빛의 세계로”

女재소자들 「복음찬가」

「어두운 그늘을 털고 복음을 통해 새 삶을 찾겠습니다.」

14일 오후 2시 청주여자교도소가 주최한 「수녀(囚女)의 성가」 공연이 열린 청주 예술의 전당에는 1천2백석의 좌석에 관객이 1천5백여명이나 몰려 대 만원을 이뤘다.

1시간 전부터 몰려온 관중들은 공연에 앞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출연하는 여죄수들을 위해 간절한

모습이었다.

이어 특별 출연한 바리톤 김진성씨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갯세마네 동산에서」 등의 성가를 불러 옥중 여인들의 재탄생을 기원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K모씨(45)는 「1시간여 동안 이들의 공연을 보며 눈물이 앞을 가려 무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가족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공연에 참가

사물놀이·에어로빅 등 축제 한마당
성가 합창하며 「새삶 재탄생」 기원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무대에 불이 들어오고 제1부 열린 한마당 사물놀이 국악공연이 시작됐다. 청주 시립국악단 羅장흥씨의 지도를 받은 여죄수들은 기성 국악인 못지 않은 연주 솜씨를 보여 줬다. 숨죽이며 기도하던 가족들도 신명나고 뛰어난 연주 솜씨에 매료돼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충북생활체육회 羅은진씨의 지도로 9명의 에어로빅 팀이 젊음의 울동을 선보였다. 이 순간 이들은 영어의 몸이 된 죄수가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의 모습이였다.

제2부에서는 31명이 출연해 「주여 이 죄인을」 「주의 기도」 등 성가를 합창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청중들도 함께 찬양을 하며 박수를 쳤고 재소자 가족들은 여기저기에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진실로 이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 삶을 얻기를 간구하는

한 모든 죄수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姜소장은 「죄를 지은 여인들이 무슨 낮으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진실로 참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오늘의 발표회가 앞으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姜소장의 인도로 재소자중 60%가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회를 후원한 田裕泰 청주지검장은 「교정사상 처음인 이런 행사를 통해 재소자들이 새 삶을 개척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趙戊柱 기자]

1997년 11월 16일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는 아가페 법인설립 감사예배에서 교계인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최수갑 대신 사랑의 수갑을”

기독교도소 법인설립 감사예배

“최수갑을 풀어내고 사랑의 수갑을 채우자”

기독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법인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도소 설립의 대장정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예배에서 김삼환 목사는 “기독교계가 교도소를 세우는 것은 시대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소자의 영적 상태에 민감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는 교도소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가페는 이날 기독교도소의 청사진도 밝혔다. 기독교도소는 재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 훈련과 기독교 철학에 기초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소자 자치회 활동과 재소자의 배우자 등 가족을 위한 지원, 출소 후 직장 마련, 지

역 교회 양육제도 등을 마련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활동도 떠나갈 계획이다.

아가페는 출소자의 재범률이 평균 80%에 이르지만 미국 텍사스주 기독교도소들의 경우 재범률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아가페도 재범률을 5~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가페는 내년말 수도권에 300억원을 들여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를 열 계획이다. 또 2015년까지 소년교도소와 노인교도소, 여자교도소 등을 차례로 설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지방 기자]

2001년 6월 24일

“중간구금형 교도소 추진”

‘아가페’ 창립 감사예배·보고회

기독교도소 재단법인 아가페 창립 감사예배 및 사업 보고회가 6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있었다.

부이사장 최성규 목사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양인평 장로(법인이사)가도, 이종운 목사(법인이사)의 설교, 기독교도소 건축이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심기도, 한기총대표회장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김일수 교수(고려대) 사회로 진행된 축하행사 및 보고회는 이사장 취임사, 이만신 목사 인사, 한기총 사무총장 정연택 장로 경과보고, (재)아가페 기획실장 김용진 목사 사업보고, 담양선교회 임석근 목사 출소자 간증으로 진행됐다.

취임사에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가 개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회사역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하면서 “이미 시작된 기독교도소 사역을 기도와 마음을 모아 넉넉히 이뤄내자”고 말했다.

(재)아가페 기획실장 김용진 목사는 “기독교도소는 500명 규모의 남자 성인수형자를 대상으로 회복주의적 행행을 실시하는 중간구금형 교도소로 출소자 재범률을 낮추고 출소 후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시범적 교정시설로 추진하고 있다”고 기본계획을 밝혔다.

7월 1일 시행되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6206호)’에 앞서 조직을 완비한 (재)아가페는 2003년 1월 재소자 입소를 목표로 건국기금에 필요한 300억 기금 모금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기도교 행사정책자료 수집, 법무부와 위탁계약 체결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길환 기자]

2001년 6월 27일

민간교도소 예산지원

정부서... 건물신축등 고려 2~3년내 운영

기획예산처는 2일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영교도소와 관련, 교도소 운영경비 등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교도소는 이달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안서 접수와 심사를 통한 위탁자 선정 등의 절차가 이뤄지게 되며 사업자 선정과 건물신축 및 수용준비를 감안하면 앞으로 2~3년 후에 실제로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국 교정회사인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서 지난해 연간 수용자 도주율은 0.006%로 미국 전체의 0.0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경비도 정부보다 5~15% 낮게 책정되고 교도소 설치비용도 15~25% 적게 들었다.

영국의 UKDS사도 블레컨허스트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매년 11~17%씩 줄여 지난 98년 33만 168파운드, 99년 75만 1251파운드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외국 사례를 감안해 교도소 부지확보와 건물 신축은 민간에서 부담토록 하되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막고 적절한 수준의 처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민영교도소 운영으로 정부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으로 재범방지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2001년 7월 3일

파출소·경찰서·경찰청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파출소·경찰서·경찰청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경과보고 .. 90

- 1. 경찰서·경찰청
- 2. 파출소

조사현황 자료 92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

- 1. 지방경찰청
- 2. 기동수사대
- 3. 여자기동수사대
- 4. 동부경찰서
- 5. 남부경찰서
- 6. 북부경찰서
- 7. 중부경찰서
- 8. 수성경찰서
- 9. 달성경찰서

보도 모음 103

● 파출소 · 경찰서 · 경찰청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경과보고

1. 경찰서 · 경찰청

2001년 1월 20일 대구 지역 8개 경찰서와 경찰청에 장애인 인권과 편의시설 관련 질의서를 보냈으며 1월 31일 서부와 달서경찰서를 제외한 6개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았다. 또 1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와 여자기동수사대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2월 7일 답변을 받았다. 여기서 경찰청(서) 내에 편의 시설 설치 유무와 장애인의 수사 또는 심문시 인권침해 여부, 장애인을 조사할 때 얼마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는가, 그리고 장애인 전문인력의 수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5월 31일 대구지방경찰청장 앞으로 수화통역사와 사회복지사의 특채 권유, 장애인 유치장 내 화장실과 세면기의 편의시설 설치, 수감·포송 등의 경찰장구의 사용시 인권침해의 우려가 없게끔 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발송했으며 6월 15일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받았다.

[표3] 참조

각 경찰서와 경찰청의 회신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조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두거나 자문을 받는 경찰서는 단 한 곳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례가 없거나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또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오는 정신지체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개 기관이 구분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류, 신체나 외모, 대화, 담당 수사관의 느낌과 직감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다.

장애인의 검찰 조사시 포송줄과 수감 등 경찰장구를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 포송줄만 한다는 대답이 한 곳, 포송줄과 수감 모두 한다는 대답이 한 곳, 모두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한 곳, 그리고 무응답 또는 기타 의견이 네 곳이었다.

장애인 전문인력의 수사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문수사요원은 없으나 필요시 초동수사 때부터 전문가를 불러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성폭

력상담소장 또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원장의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98년 4월 발효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경찰서 및 경찰청의 점자유도블록, 경사로, 장애인전용화장실, 전용주차장, 번가지지대 등을 조사했으며,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장애인 유치장의 화장실과 세면대의 편의시설은 되어 있다고 답변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더군다나 경찰서 내의 유치장은 용변을 볼 때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동료 유치인과 경찰관에게 허벅지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유치인의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어 이들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반화장실처럼 완전 격리할 경우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차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용변을 볼 때 신체가 노출되고 수감자들이 악취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찰서 유치장 시설은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건의사항	답변
청각장애인 민원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사소통과 관련해 혹시 있을지 모를 장애인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청 내 "수화통역사"를 직원으로 특채하기를 건의합니다.	· 경찰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경찰청에서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채용하며, 일반직은 행정자치부에서 채용하므로 건의하겠습니다. · 현재 "수화통역사" 필요시 지방청 및 8개 경찰서에서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협조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장애인관련 민원처리에 있어 보다 전문화된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를 특채하기를 건의합니다.	· "사회복지사" 채용 역시 경찰청에 건의하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경찰서 내 유치장에 수감하고 있는 장애인이 최소한 화장실과 세면에 있어서 만큼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유치장 내 화장실과 세면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목발은 전경찰서에 비치하였고 장애인용 양변기(지지대 포함)·세면대를 7개 경찰서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1개 경찰서는 공사중에 있어 조속히 완료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시 장애인에게 포송줄과 수감을 모두 할 것이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기관마다 융통성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신체 및 정신상의 이유로 행동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수감, 포송 등 경찰장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표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의에 따른 대구지방경찰청의 답변서 (2001. 6. 15)

* 「현재 "수화통역사" 필요시 지방청 및 8개 경찰서에서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와 협조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은 저희 협회에 단 한번도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2. 파출소

대구 지역 파출소에도 2월 21일 경찰서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2월 28일 22개 파출소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파출소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은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미처 갖추지 못한 곳은 '장애인 도움벨'을 파출소 현관 앞에 설치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청각장애인의 초동수사에 대한 질문이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4곳만 수화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한다고 답변했으며 나머지는 서면진술, 몸동작 또는 얼굴표정으로 대화

를 한다고 해 많은 일선파출소에서 수화통역에 대한 상식이 부족했다.

또 답변을 해온 모든 파출소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으나 대부분이 외모와 대화 등을 통해 파악한다고 해 방법에 있어서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이었다. 따라서 파출소에서 가장 중요한 초동수사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비과학적인 직감이나 행동 등으로만 이들을 판단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었다.

1. 지방경찰청 작성자 : 경사 홍○○ · 경위 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계 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홍보하여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1999년 발생한 정신지체 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부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장애인권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자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 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경찰청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경찰청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경찰청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 예(○) 나. 아니오()
8.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대구시 의사협회에 협조 의뢰하여 전문의의 자문을 구한 후 확인
9. 피의자 조사시 경찰청 내에서 사설경호센터 요원(경호원)에게 신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기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일반시설물(식당 등)에 까지 범위를 넓혀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함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0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

2. 기동수사대 작성자 : 경사 김○○

귀청의 성의 있는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적으로 경찰청 내(여성)기동수사대의 편의시설 및 장애인인권, 특히 요즘 문제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수고스럽겠지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경찰청입구에서 기동수사대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기동수사대 앞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기동수사대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기동수사대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기동수사대 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기동수사대에서 장애인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 6-1. >6번 문항의 응답이(가)일 경우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측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가. 간혹 있다() 나. 있을 수도 있다() 다. 들어본 적은 있다() 라. 전혀 없다()
- 6-2. 여성기동수사대에서 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가. 간혹 있다() 나. 있을 수도 있다() 다. 들어본 적은 있다() 라. 전혀 없다(○)
- 6-3. 여성기동수사대에서 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담당판사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가. 간혹 있다() 나. 있을 수도 있다() 다. 들어본 적은 있다() 라. 전혀 없다(○)
7. 여성기동수사대에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 농아자일 경우에는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를 선임 수화통화를 함.
8. 여성기동수사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점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가. 실제 조사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나. 전문가를 불러 활용하고 있다.(○) → 전문수사요원은 없으나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 선임
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현재활용하진 않는다.()
라. 잘 모르겠다.()

9.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본인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줍니까?
(시각장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조서가 있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모호하다.)
→ 시각장애인 조사시에는 시각장애인측의 변호인이나 후견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후견인들이 확인하게 조사를 함.)

10. 여성기동수사대에서 여성장애인(정신지체 포함)의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 자주 있다.()
나. 많지는 않지만 있다.(○)
다.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다.()
라. 가타()

10-1.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시 (장애인)전문가의 참여빈도는 어떠합니까?
가. 초동수사때부터 참여한다.()
나.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한다.()
다. 전문가는 조사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라. 기타 (→ 만약 조사시 초동수사 때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충분한 의사를 반영할 것임)

10-2. 여성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여자 기동수사대에서 답변할 것임

11. 가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오래된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신축건물은 필히 장애인 편의 시설을 기본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편의시설이 없을 경우 편의 시설이 있는 곳까지 조 사관이 가서 조사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할 것입니다.

2001년 2월 2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

3. 여자기동수사대 작성자: 형사반장 윤○○

귀청의 성의 있는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가적으로 경찰청 내(여성)기동수사대의 편의시설 및 장애인인권, 특히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수고스럽겠지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경찰청입구에서 기동수사대까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기동수사대 앞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기동수사대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기동수사대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기동수사대 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기동수사대에서 장애인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1. >6번 문항의 응답이(가)일 경우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측 변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가. 간혹 있다() 나. 있을 수도 있다() 다. 들어본 적은 있다() 라. 전혀 없다(○)

6-2. 여성기동수사대에서 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가. 간혹 있다() 나. 있을 수도 있다() 다. 들어본 적은 있다() 라. 전혀 없다()

6-3. 여성기동수사대에서 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담당판사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도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가. 간혹 있다() 나. 있을 수도 있다() 다. 들어본 적은 있다() 라. 전혀 없다()

7. 여성기동수사대에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 상시 근무자가 아니고 대구대 사회복지과 교수를 선임 수화통화를 함.

8. 여성기동수사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점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가. 실제 조사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나. 전문가를 불러 활용하고 있다.()
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현재활용하진 않는다.()
라. 잘 모르겠다.()

→ 수사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위 7번 항목과 같이 조치함

9.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본인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줍니까?
(시각장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조서가 있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모호하다.)
→ 현재까지 시각 장애인을 조사한 경우가 없으나 만약 조사 할 경우 장애인의변호인이나 후견인들을 입회시키고 장애인이 편안한 마음에서 조사 후 입회인의 확인 및 장애인에 대한 내용설명을 충분히 한 후 마칠 것임)

10. 여성기동수사대에서 여성장애인(정신지체 포함)의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 자주 있다.() 나. 많지는 않지만 있다.() 다.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다.(○) 라. 기타()

10-1.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한 조사시 (장애인)전문가의 참여빈도는 어떠합니까?
가. 초동수사때부터 참여한다.(○)
나.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한다.()
다. 전문가는 조사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라. 기타()

10-2. 여성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조사한 사례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여성단체인 성폭력상담소장(여성)의 입회하에 조사 필, 2회 조사시에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원장(여성원장) 입회하에 조사를 완료하였음.

11. 가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2000. 2. 10 일자(예정)로 여자기동수사대가 여성·청소년계로 이관하므로 장애인 시설(점자보도 블록 및 엘리베이터)이 설치된 사무실에서 조사 가능함.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01년 2월 2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

4. 동부경찰서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계 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홍보하여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1999년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부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장애인권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자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 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경찰서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경찰서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경찰서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구분과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 예() 나. 아니오(○)
8.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구분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정신과 의사 진단서 및 참고인의 진술
9. 유치장 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유치장 내 세면대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1. 장애인의 검찰조사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모두 하지 않는다()
12. 기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0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

5. 남부경찰서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계 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홍보하여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1999년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부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장애인권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자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 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경찰서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경찰서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경찰서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 예(○) 나. 아니오()
8.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외모와 대화의 방법
9. 유치장 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유치장 내 세면대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1. 장애인의 검찰조사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모두 하지 않는다()
12. 기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0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6. 북부경찰서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계 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홍보하여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1999년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부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장애인권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자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 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경찰서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경찰서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경찰서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 예(○) 나. 아니오()
8.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외모 및 대화로 구분
9. 유치장 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유치장 내 세면대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1. 장애인의 검찰조사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모두 하지 않는다()
→ 장애인이 중대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을시 장애정도에 따라 판단
12. 기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0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7. 중부경찰서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계 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홍보하여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1999년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부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장애인권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자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 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경찰서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경찰서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경찰서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 예(○) 나. 아니오()
8.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신체
9. 유치장 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유치장 내 세면대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1. 장애인의 검찰조사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모두 하지 않는다(○)
12. 기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0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8. 수성경찰서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계 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홍보하여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1999년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부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장애인권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자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 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경찰서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경찰서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경찰서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6.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 예(○) 나. 아니오()
8.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신체의 외부 및 언어 등 상태와 장애인 등급으로 확인
9. 유치장 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유치장 내 세면대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1. 장애인의 검찰조사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모두 하지 않는다()
→ 장애인이 중대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을시 장애정도에 따라 판단
12. 기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청의 답변은 장애인복지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200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대용감방’ 인권 사각지대

단순절도·홍악범 뒤엉켜 폭력 사고 잦아
운동·진료기회 제약...교도기관 이관을

지난 2일 충북 충주경찰서 대용감방. 이중철문구조의 12개 감방에 있는 피고인 150여명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방안에 있는 화장실을 빼면 7평 남짓한 곳에 갇힌 수감자들의 1인 평균 면적은 0.7평. 여자방과 소년방 등을 지정해 운영하다 보니 일반 피고인을 수용하는 방의 ‘인구밀도’는 훨씬 높다.

이 때문에 밤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잠자리 다툼이 일어나 칼잡과 새우잠은 기본이고, 낮시간대에 마주보고 앉아서 상대편 무릎이 닿는다. 강도 등 강력사건 피고인과 단순절도 피고인이 한방에 뒤엉켜 있지만, 부족한 수용공간 탓에 범죄별 분류는 엄두도 못낸다. 따라서 일반 교도소보다도 감방내 폭력 사고가 훨씬 잦다.

게다가 대용감방 수감자들은 운동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간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 수감자들은 여성 경찰관 부족으로 남성경찰관들의 감시를 받아야 해 용변과 탈의 때마다 민망한 일을 겪는 일이 예사다.

“까딱하면 사고나고, 사고나면 중징계인데 수감자 인권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견기간 6개월만 버티면 됩니다.”(대용감방을 관리하는 한 경찰관)

대용감방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국제법률가단체의 각종 선언이 나오기 시작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대용감방은 여전히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곳의 지난 한해 의료비는 115만원이다. 연간 수용인원이 5만 4700명인 점을 계산하면 1인당 의료비는 21원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구속중 중풍을 얻은 우아무개(48)씨와 휠체어를 타고 수감생활을 하고있는 박 아무개(54)씨는 “우리도 사람인데

최소한의 의료혜택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때 적정 인원보다 감절이 더 많은 270여명이 수감돼, 자리다툼을 벌이던 폭력배가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경기 여주경찰서 대용감방도 인원이 다소 준 점을 빼고는 예전과 사정은 다르지 않다. 5평 남짓한 감방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몸을 비비고 있고, 식사는 보리밥과, 국 단무지가 고작이다. 운동은 커녕 다리를 뻗고 앉아 있기도 힘든 실정이다.

수감자들의 하루 일과는 기상, 식사, 명상, 취침만 반복되고 있고 이중철문으로 굳게 닫힌 감방은 비상구조차 없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대용감방은 ‘골칫덩이’로 취급받은 지 오래다. 경찰은 95년 치안과 교도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며 업무 이관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원광대 장규원 교수(법학)는 “법무부가 맡아야 할 형 확정 이전의 피고인 관리를 경찰이 맡는 것은 모순”이라며 “미결 구치감을 늘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용감방은 인권침해 등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우선 여주와 서산, 2003년 청주·통영구치소를 세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용감방이란

경찰서내 ‘구치소’
전국16곳...일 잔재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

9. 달성경찰서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계 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홍보하여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특히, 1999년 발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씨 사망사건을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부예산확충과 이를 통한 장애인권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자 요청하오니 검토하신 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찰서 내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2. 경찰서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3. 경찰서 내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4. 경찰서 내 화장실에 변기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5.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현재 4층 건물임)
6. 농아인 조사 또는 민원시 활용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조사: 현재까지 사례가 없었으나, 사례 발생 시 협회에 요청계획
민원: 수화통역사 없음, 대책방안 중임)
7.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합니까? 가. 예(○) 나. 아니오()
8.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 가족 및 주변인(주민)진술, 장애인 협회 문의(회원등록여부), 장애인등록증 소지, 담당직원과의 면담 등
9. 유치장 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유치장 내 세면대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1. 장애인의 검찰조사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웁니까?
가. 포승줄만 한다() 나. 수갑만 한다() 다. 포승줄과 수갑 모두 한다(○) 라. 모두 하지 않는다()
→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현재까지 사례 없었으며 차후 사례 발생 시 인권에 있어 최대한 존중,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임
12. 기타 장애인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편의시설 대담에 있어 금융기관은 면적적용이 너무 확대 적용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 건의 소요예산 별도 확보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설치에 대한 지원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2001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대구광역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추진단

수를 가둬두는 곳이다. 구금돼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구치소와 다를 게 없지만, 대용감방은 경찰서에 설치돼 있으며, 일반 경찰관들이 교도관 구실을 대신한다.

현재 국내엔 경기 여주와 충북 충주·제천 등 전국 16개 경찰서에 있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는 행형법 68조에 근거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은 사람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갇혀 있는 유치장과 차이가 있다. 유치장에 갇힌 사람은 '피의자'이지만, 대용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다.

헌병이 경찰 업무를 보던 일제 때 감옥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미결수를 경범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던 관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2001년 2월 5일

영남일보

경찰서, 장애인 인권 死角우려

편의시설 등 아예 없고 전문가 도움 없이 조사

경찰서에 장애인 수감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인권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수동)가 최근 대구 지역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경찰서는 한군데도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경찰서 유치장안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과 세면대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찰서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농아인 조사시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찰서는 역시 없었다.

또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의 구분도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체의 외부 및 언어 등을 통해 대부분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경엽 기자] kenny@yeongnam.com

2001년 1월 27일

매일신문

장애인 피의자 편의시설 허술

호송·구금 지침 없이 일선경찰 혼선

대구시내 각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허술하다.

더욱이 장애인에 대한 검찰호송 과정에서 일부 경찰서는 포승줄로 묶는 반면 다른 경찰서는 수갑을 채우는 등 장애인 호송이나 신체구금에 대한 뚜렷한 지침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가 최근 대구경찰청과 8개 경찰서에 대한 「장애인 권익과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경찰서가 유치장내 장애인 화장실과 세면대를 갖추지 않고 농아인 조사를 위한 수화통역사를 두지 않았다.

대구 동부, 중부, 남부, 수성경찰서가 각각 유치장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수성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서는 농아인조사 또는 민원에 필요한 수화통역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에 대한 검찰호송과 관련, 동부경찰서는 장애인을 포승줄로 묶고 수성경찰서가 포승줄과 수갑을 채우는 반면 중부경찰서는 포승줄과 수갑을 모두 채우지 않는 등 일관된 호송지침이 없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구경찰청을 비롯해 서부, 북부, 달서, 달성 경찰서 등은 지체장애인협회의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김병구 기자] kbg@imaeil.com

2001년 1월 31일

경찰서 장애인 권익 '사각' 수화통역사·유치장내 편의시설 없어

지체장애인협 실태조사후 '개선' 권고

오는 7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한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최대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장애인보호법규가 대폭 강화되는 것을 계기로 장애인 단체가 대대적인 「장애인권리 확보운동」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28일 대구경찰청에 장애인인권보장과 관련한 자체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건의서를 보내고 장애인인권보호에 대한 대구경찰청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장협은 대구경찰청 및 산하 6개 경찰서에 청각장애인들의 조사를 도와줄 수화통역사가 없었고 경찰관들이 정신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장애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장협이 대구경찰청 및 시내 각 경찰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은 외모 또는 신체를 보거나(3곳) 대화 및 참고인 진술(2곳) 등을 통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단정하는 등 대다수 경찰서가 명확한 지침 없이 「정신지체장애인 판정」을 하고 있었다.

또 대구경찰청을 비롯, 산하 6개 경찰서의 유치장에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없었고 장애인을 위한 변기 지지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대구경찰청과 중·북부경찰서 등 서부와 달서경찰서를 제외한 7개 경찰서가 설문에 응했다고 지장협은 밝혔다.

지장협은 이와 관련,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화통역사와 사회복지사 특채, 유치장내 편의 시설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장협은 이와 함께 대구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장애인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해 국회 내무위원인 이해봉(한나라당)의원에 의뢰, 대구지역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지장협은 최근 종교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의 규제를 받는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1차 실태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중 시설개수권고를 한 뒤 고쳐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2001년 5월 29일

“수화통역사·사회복지사 경찰특채를”

청각장애인 사건 필담진술

가해·피해자 뒤바뀌기도

청소년 범죄 등 예방 도움

장애인과 청소년 및 노인들의 경찰관련 민원 및 사건의 올바른 처리와 이들의 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사 및 사회복지사의 경찰 특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민·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수화통역사를 통한 조사가 이뤄져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수화통역이 가능한 경찰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사건조사시 대구시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나 장애인협회 등에 수화통역사를 요청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야간교통사고를 비롯해 간단한 야간폭력사건 발생시 파출소 등에서는 수화통역사를 부르지 않고 필담(筆談)만으로 진술을 듣고 있어 사건개요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순 교통사고를 당한 청각장애인 박모씨(34)는 필담만으로 현장조사를 마친 뒤 가해자로 몰렸다가, 수화통역을 통한 재조사에서 피해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청소년 및 노인범죄와 가정폭력사건 등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회복지사의 경찰 특채도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가정 및 사회환경분 석을 통한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경찰업무가 범죄자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 예방도 중요한 만큼 비행청소년들과의 꾸준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 이들의 잠재적인 범죄육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범죄조사시 강압적인 방법보다 이들의 가정환경 등을 토대로 한 접근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급증하는 가정폭력사건도 일반 폭력사건과 다른 방향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3일 대구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 수화통역사 및 사회복지사의 경찰특채에 대해 건의했으며, 조만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도 이들의 특채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 영 기자] younger@yeongnam.com

2001년 6월 30일

영장신청 남발 “인권침해”

대구경찰 기각률 22%...전국평균보다 8%p 높아

구속·불구속 점수 차등화 등 실적평가제 도입이후 늘어

대구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대구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피의자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 경찰이 실적을 고려해 영장신청을 남발한 결과로, 인권을 무시한 수사가 많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영장신청 인원수는 2천143명, 이 가운데 473명의 영장이 기각돼 기각률이 2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영장기각률 13.9%보다 8.1%포인트가 높다.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경우는 201명으로 9.3%, 판사기각은 272명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다.

기각 사유를 보면 도주 우려 없음이 1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안경미(103명), 쌍방 합의(51명), 초범(46명), 우발적 범행(24명) 등의 순이다.

대구지역 경찰서 가운데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부경찰서로 영장신청 인원 279명 가운데 76명이 기각돼 27.2%의 기각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의 두배 가까운 수치다. 이어 달서 25%, 서부 22.3%, 남부 22.1%, 수성 21%, 지방청 20.9% 달성 20.4%, 북부 19.9%, 동부 17.2% 등이다.

이처럼 경찰의 영장기각률이 높은 것은 경찰이 구속과 불구속을 점수로 차등화하고 있는데다 사채폭력 등 특정 범죄 일제소탕 기간 등을 설정해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경찰서 형사계 한 직원은 “실적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쯤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공원 벤치에서 졸고있던 여자의 핸드백을 훔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던 L씨 등 2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되찾았기 때문에 검사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해 영장이 청구된 K씨는 판사가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달 말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S씨의 경우는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렸으나 경찰관에게 폭행 등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폭력 벌금전력이 3회 있으나 10년전의 것인 점등을 참작해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청 관계자는 “영장기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기각률을 10%이하로 끌어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장기각률이 높다고 해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영장이 신청되고 나면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합의에 적극적이어서 기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철희 기자] fehy@yeongnam.com

[이승형 기자] ishyung@yeongnam.com

2001년 7월 10일

“거짓말 세상... 절대 선진국 못돼”

현직 법무부차관 김승규 장로

공무원 신년예배서 소신 발언

세상을 어지럽게하고 있는 ‘게이트 정국’에 대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중인 김승규 장로(합천루아 교회)가 토로한 ‘거짓말 망국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본보 1월 11일자 16면 보도>

김 차관은 11일 청와대와 서울 광화문의 정부중앙청사, 문화관광부 등에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청사 뒤 종교교회(담임 나원용 목사)에 모여 드린 ‘2002 신년 축복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기에 앞서 이례적으로 10분에 걸쳐 소신 발언을 했다.

이날 대표기도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김 차관은 “관례에 어긋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기에 앞서 이자리에서 몇가지 할 말이 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 차관직이 우리 사회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며 “우리 사회의 거짓말과 허위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차관은 “이름도 다 외지 못할 정도로 각종 게이트가 난무하고 있는데 모두 주가를 조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등 거짓말로 사회를 어지럽힌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짓으로 사람을 고소하는 ‘무고죄’ 사범이 한해 1500명을 넘지만 일본은 한해 1명이 있을까말까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김 차관은 “또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500명을 넘었지만 일본은 4명에 불과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차관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저서 ‘트러스트’에 한국 사회가 대표적인 ‘저신뢰사회’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거짓말 때문에 국력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 신뢰는 노동력이나 자본과 맞먹는 사회적인 자원인데 이처럼 거짓말이 난무해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bi.co.kr

2002년 1월 13일



경찰 '성과급제' 부작용 많다

경찰이 범죄용의자 검거실적을 계량화해 인사에 반영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한 후 경찰수사가 「점수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기소중지자 검거 등 당장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업무에 경찰인력이 집중되고 있

간부들의 질책이 심해, 기소중지자를 잡는데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처럼 피해 다니는 기소중지자 검거에 치중하느라 민생치안과 직접 관련된 강·절도범죄 해

**기소중지자 검거 등 점수 따기만 매달려
강·절도사건 등 민생치안 상대적 소홀
강압수사·무리한 신병처리 등 우려도**

는 반면, 강·절도사건 등 민생치안 확립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강압수사, 무리한 신병처리 등 용의자 인권 침해로 논란이 재연될 우려도 높다는 것.

경찰은 최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용의자검거실적(35점), 유해환경업소단속(15), 방범(25), 교통사고예방(15), 대민친절·결항내부사고방지(10) 등 항목별 점수를 정해, 경찰서·부서별 실적을 1백점 기준으로 수치화해 평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경찰은 분기별·1년단위로 점수를 도출, 이를 인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검거실적만을 염두에 둔 경찰의 외형적 실적 올리기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경찰서는 우선 간부급들의 독려로 기소중지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이후 A경찰서는 7백38건, B경찰서는 3백 27건의 실적을 올렸다. 한 경찰서 형사계직원은 「한달 후 당장 다른 경찰서와 비교가 되고 검거실적이 저조할 경우

결에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A경찰서의 경우 울들어서 발생한 9건의 강력사건과 2백96건의 절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C경찰서는 지난해 발생한 4백52건, 올해 새로 발생한 1백17건등 5백70여건의 절도사건 및 6건의 강력사건을 미제로 남겨 두었다.

성과급제도는 용의자를 구속할 경우, 해당 부서에 가산점수를 주고 있어 구속영장신청의 신중함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한달새 대구시내 2개 경찰서가 용의자의 임의 동행 및 무리한 구속영장신청으로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수사경찰관도 「성과급제 도입 이후 구속수사나 입건수사가 훨씬 보편적」이라고 말했다.

[허만섭 기자]

1998년 5월 8일

야간 단순폭행 '무조건 입건' 않는다

반의사불벌죄 인정

일몰(日沒)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토록 돼 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말 개정돼 앞으로 폭행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공포된 이 법률 개정안은 야간 일몰 이후에 일어나는 '단순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무조

**합의만 형사처벌 면해
전과자 크게 줄어든듯**

건 입건해 전과자를 '양산' 하던 기존 폭행 피의자 처리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낮시간에 일어나는 폭행사건은 그동안 형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야간' 및 '2인이상'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2인 이상의 폭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유지했다.

2인 이상의 폭행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면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제정돼 40년간 시행돼온 이 법은 '전과자를 불필요하게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실상 경찰 내부에서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 무조건 입건할 수밖에 없어 많은 국민이 전과자로 전락했다"며 "반의사불벌죄 인정으로 앞으로 폭행전과자가 크게 줄어든 전망"이라고 말했다.(연합)

2002년 1월 14일

“유치장 맞나”

오디오 · 전기온풍기 · 냉온식수대...

경찰서 시설 개선 인권사각 탈피 4인용 밥상 · 이동식 좌변기까지

「집(house)같은 유치장(?)」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경찰서 유치시설이 크게 바뀌고 있다.

바닥에 놓고 먹어야 했던 유치인들의 「고개숙인 식사」가 최근 밥상 위로 올라오고 있다. 유치장내 꽃 장식과 교화용 수필집 · 종교관련 서적 비치, 명언 등을 담은 선도방송용 오디오와 CD가 착근한 지는 이미 오래된 일. 최근엔 심야 전기온풍기와 냉 · 식수대, 이동식 좌변기까지도 제공되고 있다. 김천 · 영천 · 군위 · 영주경찰서는 유치장 바닥에 밥그릇, 반찬 등을 놓고 식사하던 관행을 깨고 4인용 밥상을 넣어줘 유치인들이 둘러앉아 식사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영주서는 화재위험에다 기름냄새까지 풍기던 유치장내 석유난로를 철거, 축열식 심야전기 온풍기로 대체하고 이동식 좌변기를 들여왔다.

수필집과 종교관련 서적 176권을 비치해 유치인 교화에 나서고 있는 청도경찰서는 최근 유치장에 식수 냉 · 온수기도 설치했다.

면회객을 위한 시설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루 20여명의 면회객이 찾고 있는 의성경찰서는 1천만원을 들여 4평에 불과하던 유치인 면회실을 지난해 말 10평으로 늘리고 소파 등을 새로 비치, 경찰서 복도나 밖에서 추위에 떨던 면회객 불편을 해소했다.

또 영천서는 면회실에 유치인용 의자를 설치해 앉아서 면회객을 맞도록 했으며 칙칙한 검은 색 유치장 철장을 연녹색으로 바꿔 분위기를 밝게 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김영훈 경감은 「과거 유치인은 인격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경북청이 앞장서 유치시설 개선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2부]

2001년 1월 27일

온돌 깔고 에어컨 설치 유치장을 안방(?)같이...

경찰청 환경 개선안 마련

인권의 사각지대로 불리던 경찰서 유치장이 안방처럼 아늑한 공간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31일 2004년까지 속초, 해남 등 전국 8개 감방과 일선경찰서 유치장의 마루바닥을 온돌로 개조하고 에어컨을 설치해 4계절 적정온도를 유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장 환경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방은 교도소 공간이 모자라 넘치는 기결수들을 임시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전국에 16곳의 유치장이 ‘감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어두운 조명시설을 밝고 환한 분위기로 바꿔 유치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좌변기, 목발, 휠체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욕실과 면회실 등의 시설을 개선토록 했다. (연합)

2001년 1월 31일

매일신문

경찰 유치장 “달라졌네”

북부서 내부도색 · 난방도

북부경찰서는 최근 유치장 내부를 전면 도색하고, 200여권의 최신 도서를 비치하는 등 유치장 환경개선에 나섰다.

북부서는 유치장 조명을 예전보다 2배정도 밝게 하고, 창살과 내부를 밝은 연두색과 흰색으로 전면 도색 했다. 또 화분과 조화를 곳곳에 뒤 안락한 분위

기로 바꿨고, 난방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1층 천장과 벽을 천막으로 막았다.

이와 함께 유치장내에 책장과 서적 200여권을 비치했고, 북부도서관의 협조로 매달 최신 서적을 대출 받기로 했다. 유치인 신체 검사실도 새로 2곳을 만들어 남녀 구분해 검색키로 하고, 모포장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호준 기자]

2001년 2월 23일



구미경찰서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유치장 환경을 호텔식으로 바꿨다.

유치장에도 장애인 시설

구미경찰서, 좌변기·식탁 등 갖춰 “호텔급”

[구미]경찰서 유치장이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유치인 식사를 위한 식탁을 갖추고 실내 조명을 밝게 하는 등 호텔형 유치 환경을 갖췄다.

구미경찰서는 하루 평균 30여명의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유치장에 1천여권의 책이 갖춰진 새마을문고를 설치해 유치인과 전·의경이 이용케 하고 장애인을 위한 좌변기, 목발, 휠체어, 냉온수기 등을 마련했다.

어두컴컴한 유치장 조명을 독서가 가능하도록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꾸고, 매주 한차례 정기 소독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유치장을 갖추자 직원들의 발길도 잦아졌다.

구미경찰서는 유치인 교화를 위해 상모교회 김승동 목사와 남화사 주지 김병림 스님을 경복과 경승으로 초빙해 매주 한차례씩 설교와 법회를 열며, 정기적인 명상시간도 갖고 있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2001년 3월 14일



부드러운 분위기로 시설을 개조한 대구중부경찰서 유치장

인권보호 유치장이란 이런 곳

중부룩, 온돌시 바닥 설치
조명 밝게하고 책도 비치
에어컨·식탁·샤워시설도

칙칙하기만 하던 경찰서 유치장이 시설 개·보수로 유치인의 인권과 교화를 위한 곳으로 변모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마루로 돼있던 유치장 바닥을 따뜻한 온돌식 보일러 바닥으로 개조해 아늑한 방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다. 무더운 여름에 대비해 에어컨도 설치했다.

또 조명시설을 개선해 어둡침침했던 유치장을 밝은 분위기로 바꿨으며, 조화도 비치했다. 그동안 실내가 어두워 독서가 불가능했던 유치인들은 이제 밝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경찰측이 새로 마련한 200여권의 신간을 골라 읽을 수 있게 됐다.

환경과 위생도 크게 나아졌다. 장애인과 노약자,

환자들을 위해 수세식 좌변기가 설치됐으며, 샤워시설도 별도로 마련했다. 경찰은 유치인 모포 세탁, 소독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유치장을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찰은 인권보호차원에서 유치인 신체수색실을 별도로 설치, 입감시 신체검사용 가운과 금속탐지기를 활용하고 있다. 또 4인용 식탁을 제공, 유치인들이 그동안 바닥에서 식사를 해왔던 불편을 해소했다.

이외에도 냉·온수기를 비치했으며 면회실도 별도로 마련, 면회시 다른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 친화적 유치장 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승형 기자] ishyung@yeongnam.com

2001년 3월 23일

장애인 유치실 설치 등 대민봉사 솔선수범

여경의 날 ...행자부장관 표창
대구남부경찰서 김남희 계장

"대구의 여경들은 어느 지역 여경들보다 치안과 대민봉사에 적극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55회 여자경찰의 날(7월1일)을 맞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대구 남부경찰서 김남희 수사1계장(33·경위)은 수상의 공을 동료 여경들에게 돌렸다.

김 계장은 인권친화적 유치장 만들기와 여경기동대, 여경들로 구성된 포순이 봉사단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에 상을 받게 됐다.

남부경찰서 유치장은 장애인 및 여성 유치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인권친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돼 대구에서 최우수 모범 유치장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 계장은 60여명으로 구성된 여경기동대 제대장을 맡아 각종 시위에서 교통 소통과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평화적인 시위 정착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 매달 1회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 활동을 펼치는 포순이 봉사단 팀장을 맡아 솔선수범,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갈수록 여경들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경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대시민 봉사 뿐 아니라 각종 경찰 분야에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인정받고 있죠." 전남 고흥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1988년 1월 순경 공채로 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김계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근무를 비롯해 대구 동부서 민원실, 달서서 형사관리계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경위로 승진하면서 남부서 수사1계장을 맡고 있다.

제복에 마음이 끌려 경찰이 됐다는 김 계장은 "앞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분야에서 근무해 보고 싶다"면서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ishyung@yeongnam.com

2001년 6월 30일

유치장서 받는 '푸짐한 생일상'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푸짐한 생일상을 받을 수 있다.

경북 경산경찰서(서장 정홍식 총경)는 이달부터 유치인들의 인권 보호와 교화를 위해 유치장에서 생일을 맞은 유치인에게 생일상을 차려줘 호응을 얻고 있다.

유치인들에게 생일상을 마련해 주는 경산경찰서가 처음이며, 지난 28일 최모씨(41)는 쌀밥과 미역국, 각종 고기 반찬 등 1식7찬의 생일상을 처음으로 받는 감격을 누렸다.

이날 최씨가 받은 생일상은 평소 유치인들에게 제공되는 잡곡밥 등 1식3찬과는 품격이 다른 것이었다.

경찰은 또 이날 생일상을 물린 뒤 유치장 내 모든 유

치인들을 한자리에 모아 촛불을 밝히고 '사랑의 케이크'와 떡, 음료수, 과일 등으로 유치인들을 위로했다.

생일상과 축하음식을 받은 최씨는 "경찰이 유치인들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을 줄 몰랐다"며 "눈물로 생일상을 받고 나니 한 순간의 실수가 저절로 뉘우쳐진다"고 말했다.

생일상은 각종 고소·고발에 따른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생일을 확인한 뒤 경무과로 연락하면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정성껏 차려져 유치장으로 배달된다. 정 서장은 "유치장에서 생일을 맞거나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유치인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생일상 차려주기를 시작했다"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산 기자]

2001년 9월 1일

매일신문

피의자 포승줄 인권침해 아닌가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차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는 구급자들의 인권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보면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때 한 의원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한해 동안 인권침해 문제로 수사기관과 교정기관 직원이 고발당한 사건이 1천 35건이나 됐다고 한다.

사람들이 수사과정과 교정기간중 적지 않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느껴 그같은 고발이 있었을 것이다.

범죄 용의자들이 재판받을 때 포승줄로 묶인 채 다니는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감자의 그같은 모습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형 확정전에 중죄인이라는 예단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느껴진다.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자유민주주의의 법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 사법당국은 포승줄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이다운(대구시 비산4동)

2001년 9월 21일

속보이는 유치장 화장실 ‘인격침해’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일 송모(여)씨 등이 「경찰서유치장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등이 외부에 노출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 등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은 두쪽 면이 바닥에서 74~76cm 높이로 용변 볼 때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동료 유치인과 경찰관 등에게 허벅지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화장실 사용자들이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용변보는 모습 외부노출 인격 침해”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사용강제 행위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고 냄새가 새나오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현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일 송모씨(여) 등이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 등이 외부에 노출돼 인격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생리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등 인격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치장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

2001년 7월 21일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 등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은 두쪽면이 바닥에서 74~76cm높이로 용변 볼 때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동료 유치인과 경찰관들에게 허벅지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화장실 사용자들이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생리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등 인격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치장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7월 21일

화장실 人權

헌법재판소가 요즘 일을 많이 한다. 돈 많이 낸 사람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전국구(全國區) 아닌 ‘전(錢)국구’ 의원 소리를 듣는 비례대표제 의원 투표방법을 바꾸도록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차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용변을 볼 때 신체가 노출되고 수감자들이 악취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찰서 유치장 시설은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19일 결정했다.

임상병리사인 30대 초반의 송모씨(여)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2시 시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여를동안 유치장에 구금됐다.

5평 정도의 유치장 구석에는 용변을 보는 곳이 있었는데 화장실(室)이라기보다 용변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시설이었다. 이 화장실은 칸막이가 60cm정도로 낮아 남자 유치장의 보호관이 정면으로 볼 수 있고 쪼그려 앉은 뒤에도 다른 사람들과 얼굴이 그대로 마주쳐 수치심으로 ‘불일’을 보지 못하고 이를 참았다.

이를 뒤에 석방된 송씨는 동네 청년회 모임에서 이 일을 이야기했고 청년회 주선으로 변호사를 만나 헌법소원을 냈는데, 현재가 1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는 “용변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악취와 소리가 흘러나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도적 고려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난해 8월부터 유치장 화장실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현재 결정에 따라 2004년까지 전국 220여개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모두 수세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화장실처럼 완전 격리할 경우 자해(自害)나 자살의 위험이 있다는 경찰 발표도 일리가 있는 만큼 유치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움직임이 살필 수 있도록 개선하면 될 것이다.

2001년 7월 21일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 판결... 경찰 편의적 수사관행 제동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서 유치장의 ‘알몸수색’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해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두차례 알몸수색을 당한 민주노동당원 박아무개(여·24)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알몸수색은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26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해 등 사고 방지와 유치장내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 등은 선거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체포 당시 흉기 등을 감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며 “이런 상태에서도 경찰이 이들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것은 수용자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알몸수색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오랫동안 반복돼 왔고 그동안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 20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민주노동당 소식지를 배포하다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유치장에 수용될 때와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재수용될 때 등 두차례에 걸쳐 알몸수색을 당하자 석방 뒤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그뒤 1심에서 ‘국가가 4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2001년 11월 8일

“경찰 알몸신체검사 위법”

대법 “수치심 유발 등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

민노당 여성3명 승소

대법원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의 관행적인 ‘알몸 신체검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처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7일 지난해 3월 경기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박모(24)씨 등 민주노동당 여성당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알몸 신체검사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0월 6일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구치소 수감시와 같은 달 14일 전교조 교사의 교육부 앞 시위 때도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사건 피의자인 원고들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찰관이 알몸 검사말고는 흉기를 찾아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는 행형법(行刑法)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형법에서 허용하는 신체검사는 유치장 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예나 수치심 등 수용자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속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알몸 신체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 제258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내부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적법성 여부는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소식지를 주택가에 뿌린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뒤 속옷을 포함한 상·하의를 겨드랑이와 무릎까지 벗은 가운데 앉았다 일어서기를 3차례 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경찰청은 “알몸수색이 문제가 된 이후 훈령을 2차례 개정,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운을 입힌 채 정밀신체검사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손석민 기자] hemes@hk.co.kr

2001년 11월 8일

기타 사례

기타 사례	124
1.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2.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3. 지체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	
성경에서 장애인 관련용어 변경	126
보도 모음	127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13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35
부록	142
1. 세계인권선언	
2. 장애인 인권현장	
3. 장애인 권리선언	
편집후기	149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 기타 사례

1.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정신지체 3급의 전○○(남, 50세)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단층주택을 담보로 하여 N금융기관에서 이천만원을 용자받아 자신의 이웃집에 살던 김○○(남, 33세)씨에게 빌려 주었다. 하지만 채무자 김씨는 원금을 갚지도 않고 이자 입금 기일조차 지키지 않아 전씨의 집은 현재 경매처분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했다.

또한 전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L사 등 카드회사에서 두차례에 걸쳐 천삼백만원을 빌렸으며 말로만 갚겠다고 하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한다. 상담인(전씨의 매형)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받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종류의 상담은 처음이 아니다.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라고 보기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용자받은 돈을 선뜻 빌려준 인간의 순수함과 선량함을 무참히 짓밟은 이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파렴치의 전형이다.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 상대가 세상물정이 어두운 장애인이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리라.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하기로 했다. 아직 경매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기에 먼저 채무자 김○○에게 내용증명 통지를 한 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더 이상 변제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열흘 뒤 전씨의 매형 김○○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채무자 측에서 7월말까지 이자를 갚아주기로 약속했으며 원금도 최대한 빨리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한다.

잘된 일이긴 하지만 어쩐지 씁쓸하다. 당연한 권리마저도 장애인들은 쉽사리 누릴 수 없는 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2.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지체장애 2급인 상담인(남, 25세)이 석달전 컴퓨터 전문업체인 J사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구입한 후 이상이 생겨 수리를 맡겼으나 전보다 성능이 떨어진 것 같아 보였다고 했다. 따라서 상담인이 확인해 보니 메인보드, VGA, 하드디스크가 수리과정에서 중고제품으로 바뀐 것 같아 대리점에 항의하니 “그런 일 없다”며 발뺌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인은 돈으로 환불받기 원하고 있다.

상담인이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J사는 제법 알려진 유망 기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각지에 대리점을 둔 탄탄한 기업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범죄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담인이 컴퓨터 수리를 맡긴 J사 대리점에 일단 전화를 해봤다. 대리점측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며 펄펄 뛰었다. 사실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었다. 상담인의 집과 가까운 B복지관의

사회복지사 K씨에게 의뢰해 컴퓨터 전문가와 함께 실사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상담인의 컴퓨터에서 앞서 말한 부품 3개가 중고제품으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J사 서울 본사에 연락해 이런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당장 환불과 부정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3일 뒤 상담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비록 환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조건이었으나 앞으로 A/S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대리점에 대한 징계를 약속 받았다고 했다.

물론 해결은 되었지만 결과가 썩 만족스럽진 않다. 그동안 상담인이 그들로부터 받았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 버릴지 모를 일이다.

3. 지체장애인에 대한 폭행 사건

- 2001년 1월 지체장애 3급 배○○(25세, 남)씨는 후배 이○○와 하○○과 함께 술을 먹고 집에 가던 중 순찰차를 타고온 김○○ 순경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방문 당시 안면의 오른쪽 눈부위(전치 2주)가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정강이와 무릎 등에 좌상(전치 2주)이 있었음.
- 2001년 3월 지체장애 4급 이○○씨가 형수가 장사하는 식당에 점심 식사하러 갔다가 가게 입간판 처리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공무원 S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함.
- 2001년 4월 지체장애 2급 오○○씨가 지하철을 타려고 직원을 호출했다가 관련 직원에게 “장애인들은 지하철 타지 마라”라는 폭언을 들음.
- 2001년 5월 지체장애 2급 김○○씨가 대구 K병원에서 퇴원관계로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의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 2001년 7월 지체장애 3급 우○○씨가 이웃에 사는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가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로 우○○씨를 밀어버리고 도끼와 칼로 상처를 입히는 등 전치 16주의 폭행을 가함.

● 성경에서 장애인 관련용어 변경

교회나 성당에서 장애인을 지칭할 때 소경, 앉은뱅이, 절뚝발이 등 비하하는 용어들을 여과없이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본 협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장애인관련 용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1911년 최초로 개역되었는데 당시 사회적 상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성서 본질적인 내용과 달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시각으로 인한 실수로 비하하는 용어들이 쓰여진 걸로 보여졌다. 그동안 1938년 1차 개정, 1961년 2차 개정, 1998년 3차 개정을 통한 장애인을 올바르게 지칭하려는 노력들로 인해 지금 많은 부분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과는 별개로 교회나 성당에서 설교 또는 교육 중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아직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998년 3차 개정에서는 장애인 관련용어가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 있었다. 대한성서공회에 문의해 본 결과 문둥병자는 나병환자, 소경은 맹인, 난쟁이는 키 못 자란 사람, 굵사등이는 등 굽은 자, 병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 귀머거리는 못 듣는 사람, 절뚝발이는 다리 저는 자, 불구자는 장애인, 앉은뱅이는 못 걷는 사람, 병신은 몸 불편한 자 등 장애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일선 교회나 성당에까지 파고들어 생활 속에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성서자체가 시적인 표현이 많고 신이 행하는 기적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이 장애인이나 장애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고 자애로운 분이였다면 성서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신의 기본적 견해를 왜곡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지칭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개정전	개정후	비 고
문둥이	나병환자	출4:6, 레13:2, 민5:2, 신24:8, 삼하3:29, 왕하5:6 등
소경	맹인	출4:11, 레19:14, 신27:18, 삼하5:6, 욥29:15 등
난쟁이	키 못 자란 사람	레21:20
굵사등이	등 굽은 자	레21:20
병어리	말 못하는 사람	출4:11, 시31:18, 겔3:26, 마9:32, 막7:37, 눅1:22 등
귀머거리	못 듣는 자	출4:11, 사29:18, 마11:5, 사35:5 등
절뚝발이	다리 저는 자	막9:45, 요5:3, 레21:18, 삼하4:4, 욥29:15, 렘31:8 등
불구자	장애인	마15:30-31, 마18:8, 막9:43 등
앉은뱅이	못 걷는 사람	마11:5, 눅7:22, 행3:2, 행8:7 등
병신	몸 불편한 자	눅14:13, 눅14:21 등

[표4] 1998년 개역개정판 성서에서 변경한 장애인 관련 용어

※ 일부 교단에서는 장애인 관련용어 변경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중앙회와 함께 대처할 것 입니다.

“장애인 비하용어 쓰지 맙시다”

‘종교단체 용어 바꾸기’ 지체장애인협 캠페인

장애인들이 자신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에 대한 개선운동에 나섰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에서 출발한다고 판단, 이러한 용어 사용을 고쳐 장애인 인권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는 이달 중순부터 교회와 성당 등지에서 장애인 관련 용어 바꾸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소경」 「앉은뱅이」 「절뚝발이」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교회와 성당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개신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관련 용어들을 조사했으며 용어 상당수가 이미 개선된 사실을 발견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문둥병자를 나병환자로, 소경은 맹인, 난쟁이는 키 못자란 사람, 굵사등이는 등 굽은자, 병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 절뚝발이는 다리 저는 자, 불구자는 장애인, 앉은뱅이는 못 걷는 사람, 병신은 몸 불편한 자 등 장애인들의 요구를 수용, 대다수 용어가 고쳐졌다.

하지만 성서 안의 용어만 고쳐졌을 뿐 종교단체에서 사용되는 일상용어는 달라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

지체장애인협회 노세중 국장은 『종교시설에 갔던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절뚝발이, 병신, 불구자 등의 어휘가 여과 없이 쓰이는 설교 내용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컸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비하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넘어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교회와 성당 등에 바른용어쓰기 운동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발송,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최경철 기자] koala@imaeil.com

2001년 10월 3일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용어 바로쓰기 캠페인 성경 등에 나오는 절름발이, 병어리 등 지적

대구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에서는 지난 9월 부터 장애인 관련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장협 관계자는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에게 주는 고통도 심각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오는 편견이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시작

될 당시 번역된 내용이 현재에 적용되는 데서 오는 문제이기에 당장 그 내용을 수정한 성서를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하면서,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협회 이현석 복지과장은 "현재 끊임없이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에게 주는 고통도 심각하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오는 편견이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시작됐다.

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단체, 신문·방송, 정부 등에서 펴내는 책자에서마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을 여과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지장협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장애인 비하 용어들을 정리했는데, 성서의 '앉은뱅이', '난쟁이' 등과 신문·방송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절름발이행정', '반신불수 경제' 등, 정부 법령집에 나오는 '정신박약' 등이 지적됐다. 지장협은 대구기독교 장애인 신우회와 함께 캠페인 홍보 스티커를 교회 등 관련 기관에 붙여 홍보하고, 신문과 방송 모니터를 통해 장애인 비하 용어를 지적하고, 길거리 포퍼먼스 등을 통해 장애인 비하 용어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계명대 신학과 황재범 교수는 "성경이 처음 도입

발생하는 돌발적인 사고로 볼 때, 일반인들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애인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부]

“목사님! 장애인 비하용어 쓰지 마세요”

교회 상대 캠페인 펼치는
대구장애인협회 송덕준 실장

“신부님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발 장애인 비하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종교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비하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송덕준(32) 기획실장은 “아직도 절름발이, 불구자, 문둥이, 소경, 앉은뱅이 같은 용어가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것도 지도자들이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몇차례 성경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성서 속에서는 비하용어를 많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선 교회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병어리, 소경 등의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체장애인협회는 앞으로 스티커 1만여장을 만들어 대구지역 교회 등에 나눠주고 동성로 등 대구 도심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여 나갈 계획도 세워냈다.

또 16개 시·도 지체장애인협회에 동참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소경은 시각장애인, 병어리는 청각장애인으로 불러달라는 캠페인을 앞으로 꾸준히 펼쳐나갈 겁니다. 먼저 대구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다음에 종교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도 장애인을 일반인과 똑같이 사랑하실 걸로 믿고 있다”며 “사람들이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실수가 9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2001년 10월 9일

평양 24시 도시거주 제한 등 「통제」 강화

북한의 장애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평양의 비릇 남포·개성·청진 등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도시는 장애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북한 당국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농아·맹아 등 지체부자유자들을 일정지역에 이주시키는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평양의 경우 인근 군으로, 지방도시는 농촌이나 산간오지로 추방, 장애인들의 거주를 제한한다.

지난 88년 김정일은 89년에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비, 평양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을

직장배치·식량배급 불이익 등 차별 주민 편견도 심각... 각종 홀대 "신음"

강제추방, 또 한차례 회오리를 일으켰다. 축전에 참가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에게 장애인이 없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선전을 하기위한 조치였다. 장애인이 미성년인 경우는 부모와 함께 추방하고 성년으로 세대주인 경우는 그 가구 전체를 강제 이송하기도 했다.

장애인학교가 따로 없는 북한에서는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의 교사들조차 장애학생의 결석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복이나마 받고자 억지로 학교에 보내고 있는 실정. 당간부등 상류층은 자녀가 추방대상에서 제외돼도 집안에 가둬 두거나 평양외곽의 친척들에게 맡기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편견도 심각한 수준이다. 나이든 장애인을 존칭없이 함부로 대하거나 비인격적 모욕을 대수롭지 않게하고 있다는 것. 또 직장내 각종 배급에서도 차별을 받아 장애인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인과의 결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북한의 장애인들은 당국의 통제정책과 주민 홀대 등 2중 3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장애인의 사회참여촉진을 보장하기 위해 1997년 4월 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 4~6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들은 시설주관기관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편의시설의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미 설치된 편의시설의 이용 편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법 시행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각급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비시설의 설치 및 보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6개 시·도 협회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조사단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편의시설 이용자 체험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의시설 미비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규 시행 이후 대구 지역 관공서를 비롯, 공공시설 등 대상기관들이 서둘러 시설을 갖추어 편의시설 설치율은 크게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실제 느끼는 "체감편의"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였다.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대구시청, 구청, 동사무소,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등법원, 경찰청 및 경찰서, 파출소, 종합병원, 도서관 등 총 84개의 기관에 장애인과 동행해 실시한 "체험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5-1]에서 보듯이 주출입구의 경우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수평구조인 기관이 95.2%에 달했으나 경사로의 각이 높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출입하기에는 어려웠던 곳이 80%나 되었다([표 5-2] 참조).

편의시설 종류	대구 시청		고 군청 (8)		동사무소 (28)		고등 검찰청 고등법원 (2)		경 찰 청 경찰서 (9)		파출소 (17)		종합병원 (7)		도서관 (3)		기타 (10)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매개 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1	-	8	-	28	-	2	-	9	-	17	-	6	1	3	-	7	3
	장애인 전용 주 차 구 역	1	-	8	-	9	19	2	-	9	-	3	14	7	-	3	-	5	5
	주 출 입 구 높이차이제거	1	-	8	-	26	2	2	-	9	-	17	-	6	1	3	-	10	-
내부 시설	출 입 구 (문)	1	-	8	-	28	-	2	-	9	-	13	4	7	-	3	-	9	1
	복 도	1	-	8	-	28	-	2	-	9	-	5	12	7	-	3	-	10	-
	계 단 승강설비	1	-	4	4	12	16	2	-	1	8	1	16	7	-	3	-	3	7
위생 시설	화 대 변 기	1	-	8	-	20	8	2	-	9	-	14	3	7	-	3	-	6	4
	장 소 변 기	1	-	8	-	18	10	2	-	9	-	14	3	6	1	3	-	5	5
	세 면 대	1	-	7	1	15	13	2	-	7	2	10	7	6	1	3	-	5	5
	욕 실	-	1	1	7	-	28	-	2	-	9	1	16	3	4	-	3	-	10
기타 시설	샤 워 · 탈 의 실	-	1	1	7	1	27	-	2	-	9	1	16	7	-	-	3	-	10
	침 실	-	1	-	8	4	24	-	2	-	9	-	17	7	-	-	3	-	10
	열 램 석	-	1	4	4	8	20	-	2	4	5	2	15	2	5	2	1	-	10
기타 시설	결 수 대 · 작 업 대	1	-	8	-	16	12	2	-	8	1	6	11	5	2	3	-	5	5
	판 매 기	1	-	8	-	9	19	1	1	9	-	-	17	6	1	3	-	10	-
음 료 대	-	1	8	-	11	17	-	2	-	9	5	12	4	3	3	-	6	4	

[표5-1] 편의시설 정비현황 (2001. 11. 24 현재)

공공시설		체험결과	
대구시청	설치 1	미설치	①본청 주출입구는 수평구조 ②의회와 민원실의 경사로는 높아서 장애인 혼자 휠체어를 타고 오르기에 힘이 든다.
구. 군청 (8)	설치 8	미설치	①남구청만 수평구조 ②본청, 민원실의 경사로는 7개 구. 군청은 모두 높다. ③달성군청은 민원실 경사도가 높다. ④수성구청은 경사로 규격 미달
동사무소 (28)	설치 28	미설치	①신천 1·2동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설치 ②상인2동, 남산4동, 지저동, 대신동, 안심3·4동, 신천1·2동사무소는 경사로 완만하며 20곳은 경사각이 높다.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2)	설치 2	미설치	①고등검찰청은 경사각 완만 ②고등법원은 경사각이 높다.
경찰청 경찰서 (2)	설치 9	미설치	①달서, 달성경찰서 민원실 완만 ②경찰청 및 8개 경찰서는 모두 경사각이 높다. ③남부경찰서 민원실 규격미달
파출소 (17)	설치 17	미설치	서문, 신남 덕산파출소 경사로 이용시 편안하며 나머지 파출소는 경사각이 높고 좁아서 이용시 불편
종합병원 (7)	설치 6	미설치 1	①동산병원은 점자블럭 이용시 폐문임. ②경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병원은 경사로의 각도가 높았다. ③파티마 병원은 공사중
도서관 (3)	설치 3	미설치	①남부는 수평구조 ②두류는 경사도가 높다. ③동부는 경사로 완만
기타 (10)	설치 7	미설치 3	①서대구 우체국은 경사도가 길지만 경사각이 높다. ②팔공정보문화센터는 경사로 이용시 편안함. ③평리2동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평리동지점·대평리 지점은 휠체어 사용 불가

[표5-2] 주출입구 접근로

공공시설		체험결과	
대구시청	설치 1	미설치	①대구시청 2면, 주차면수와 장애인 이용률에 비해 적음. ②의회 1면, 규격미달(길이)
구. 군청 (8)	설치 8	미설치	①남구청과 구의회는 2면을 같이 사용해 주차면수가 적다. ②달서구청 7면, 달성군청 3면으로 넉넉함.
동사무소 (28)	설치 9	미설치 19	①안심3·4동사무소는 3면, 지저동사무소는 2면, 범물2동, 현풍면, 대명10동, 대명3·7동, 봉덕1동사무소는 각각 설치 되어 있음. ②구지면, 회원읍사무소는 설치 되어 있으나 규격 미달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2)	설치 2	미설치	①검찰청은 6면 ②법원은 3면이지만 이용률에 비해 적음
경찰청 경찰서 (2)	설치 9	미설치	①경찰청은 5면 ②남부경찰서는 5면이지만 민원실과의 거리가 멀고 경사가 있어 불편 ③7개 경찰서는 각각 2면
파출소 (17)	설치 3	미설치 14	①구지, 안심 2면, 회원파출소 설치 ②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부분 미설치
종합병원 (7)	설치 7	미설치	①동산병원 7면, 경북대학병원 3면, 카톨릭병원 17면, 파티마병원 4면에 비해 이용률에 비해 적음 ②영남대병원 45면으로 적정 ③보훈병원은 주차면수는 많으나 규격미달
도서관 (3)	설치 3	미설치	남부는 3면, 두류·동부는 각각 2면 설치
기타 (10)	설치 5	미설치 5	서구 상수도 사업소, 평리2동 새마을 금고, 대구은행 평리동지점·대평리 지점,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미설치

[표5-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원래 주차공간이 협소한 일부 동사무소, 파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규정상 적정하긴 했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세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부 경찰서와 병원의 경우 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거리가 너무 멀어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해 이동하기에 힘이 든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표5-3] 참조).

승강기와 휠체어리프트 설치율은 35.7%(30곳)에 그쳐 나머지 54개 기관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2층 이상 이동하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했다([표5-4]).

공공시설		체험결과	
대구시청	설치 1	미설치	①대구시청 승강기 2곳 설치 ②의회는 계단으로 승강기 미설치
구. 군청 (8)	설치 4	미설치 4	①남구청, 달성군청은 계단으로 이동 ②수성구청은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2대 보유 ③북구청은 10계단 이동 후 승강기 설치 ④달서구청은 승강기 2곳, 휠체어리프트 1개 ⑤서구청은 4층까지 리프트 설치
동사무소 (28)	설치 12	미설치 16	①신천1·2동사무소는 승강기 설치 ②범물2동사무소는 리프트 설치 ③안심3·4동, 지저동, 대명1, 4, 3·7, 8, 10, 11동, 봉덕1동사무소는 단층임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2)	설치 2	미설치	①법원은 승강기 설치를 하였으나 장애인용 안내표시 없음 ②검찰청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경찰청 경찰서 (2)	설치 1	미설치 8	①경찰청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②8개 경찰서는 계단으로 2층 이상 사용 불가능
파출소 (17)	설치 1	미설치 16	단층일 경우는 승강기가 필요 없음
종합병원 (7)	설치 7	미설치	①경북대학병원, 파티마병원, 카톨릭병원, 영남대학병원은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하지만 전체 사용자) ②동산병원은 장애인용 미설치
도서관 (3)	설치 3	미설치	남부도서관은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평상시 미작동이고 안내실에 요청)
기타 (10)	설치 3	미설치 7	①팔공정보문화센터, 서부정류장은 승강기 설치 ②성서종합복지관은 리프트 설치

[표5-4] 계단, 승강설비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설치율이 82%(60곳)에 달했으나 전층을 다 설치한 곳은 7곳(9.5%)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지역의 모 구청은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3층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3층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 대한 안내표시가 없는 곳이 많아 전용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표5-5] 참조).

이번 조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관의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설치 정도가 다양했다. 담당자가 편의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었던 지역의 Y병원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해 놓았다. 편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법규정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불편한지 편리한지 따져보는 세심함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사회적 정서이다.

●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제2조 제1항 관련)

공공시설				체협결과
	화장실	설치	미설치	
대구시청	대변기	1	·	①대구시청은 각층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1층을 제외하고 장애인 마크 미 부착, 2층 이상 화장실 문 위치 바꿈. ②의회는 화장실 안쪽 장애인 화장실 앞에 경사로 설치(사용 불편)
	소변기	1	·	
	세면대	1	·	
	대변기	8	·	
구. 군청 (8)	대변기	8	·	서구청 장애인 화장실 3층 이동불편 달성군청 장애인 화장실 협소
	소변기	8	·	
	세면대	7	1	
동사무소 (28)	대변기	20	8	①신당동, 남산4동, 비산2·3동, 평리2·3, 6동, 내당1동사무소는 미설치 ②범어1동, 구지면사무소는 설치는 되어 있으나 계단이라 사용 불가능 ③규격 미달과 한쪽만 설치 된 곳도 있다.
	소변기	18	10	
	세면대	15	13	
고등 검찰청 고등법원 (2)	대변기	2	·	①법원은 대변기 지지대 부적정 2개 ②검찰청은 폭, 넓이 충분
	소변기	2	·	
	세면대	2	·	
경찰청 경찰서 (9)	대변기	9	·	①경찰청은 폭, 넓이 충분 ②서부경찰서는 폭, 넓이 충분, 7개 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설치
	소변기	9	·	
	세면대	7	2	
파출소 (17)	대변기	14	3	①대명, 덕산, 현풍파출소는 장애인 사용 불가능 ②장소는 협소로 지지대 부착이 저조함.
	소변기	14	3	
	세면대	10	7	
종합병원 (7)	대변기	7	·	①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 ②영대병원은 6층 정형외과 병동에 특 별전용 화장실 설치(자동문, 비데기, 다리받침대), 문틀에 스텐으로 감 싸 휠체어 사용 용이 ③동산병원은 입구폭 부적정
	소변기	6	1	
	세면대	6	1	
도서관 (3)	대변기	3	·	①남부도서관은 2층 전용 열람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②장애인 화장실이 한 곳 뿐이라 마음대로 사용 못해 아쉽다.
	소변기	3	·	
	세면대	3	·	
기타 (10)	대변기	6	4	①팔공 정보 문화센터는 2명 정도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 ②서구 상수도 사업소, 평리2동 새마을 금고, 대구은행 평리동지점, 대 평리 지점은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소변기	5	5	
	세면대	5	5	

[표5-5] 장애인 화장실

공공시설	
대구시청	대구시청, 시의회, 민원실
구. 군청 (8)	달성군청, 달성구청, 북구청, 남구청, 서구청, 동구청, 중구청, 수성구청 및 각 민원실
동사무소 (28)	비산2·3동사무소, 평리1·2,3,6동사무소, 내당1동사무소, 안심3·4동사무소, 지리동사무소, 신천1·2동사무소, 범물1·2동사무소, 중동사무소, 진천동사무소, 성인2동사무소, 신당동사무소, 남산3·4동사무소, 대신동사무소, 구지면사무소, 화원읍사무소, 현풍면사무소, 대명1,4,3·7,6,10,11동사무소, 봉곡1동사무소
고등 검찰청, 고등법원 (2)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등법원
경찰청, 경찰서 (9)	대구지방경찰청, 달성경찰서, 달성경찰서, 북부경찰서, 북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수성경찰서 및 각 민원실
파출소 (17)	상인2동 파출소, 구지 파출소, 명동 파출소, 대명 파출소, 서문 파출소, 신남 파출소, 덕산 파출소, 평천 파출소, 범어1,3동 파출소, 만촌2동 파출소, 만 심 파출소, 신천4동 역전 파출소, 신천3동 파출소, 진천 파출소, 화원 파출소, 현풍 파출소
종합병원 (7)	동산병원, 경북대학병원, 카톨릭병원, 영남대학병원, 대구의료원, 보훈병원, 파티마병원
도서관 (3)	대구남부도서관, 대구두류도서관, 대구중부도서관
기타 (10)	서대구 우체국, 달서 우체국, 서부정류장, 팔공 정보 문화센터, 평리2동 새마을 금고, 대구은행 평리동 지점, 대구은행 대평리 지점, 서구 상수도 사업 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표5-6] 조사 대상기관명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제1급 1. 두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두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2급 1. 한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 제3급 1. 두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제6급 1. 한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제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 제6급 나쁜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이 손실된 사람

-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제4급 1.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

-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제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제3급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발달장애(자폐증)인

-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제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격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간호인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1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가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제5회 총회에서 채택

| 전문 |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는 모든 사람의 최고열망으로 선포되어 왔으므로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권을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절대 긴급하므로, 제 국민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제 국민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신의 존엄성과 가치와 남녀동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 보다 광대한 자유 안에서 사회를 향상시키고 일층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존경이념을 촉진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이 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선언을 발표하는 바이니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경이념을 깊게 하도록 교육하며 국가적 또 국제적으로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가맹국 자신의 인민들과 통치하에 있는 인민으로 하여금 이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충실히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 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1. 모든 사람은 종족, 살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뿐만 아니라 각자의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지역이거나 신탁통치지역이거나 비자치 지역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상, 관할상 혹은 국제상 지위에 있어 하등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노예신분이나 노예상태하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제5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삶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차별대우에 선동되지 않도록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혹은 법률이 부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 국가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체포, 감금 혹은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그에게 대한 범죄소송을 제정함에 있어 자주적이며 불편부당한 공개법정 앞에서 하등의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법상 범죄로 인하여 소추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확보되어 있는 공개재판에서 법에 의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한 자로 간주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행위의 당시 국내법상으로는 국제법상으로는 형법상의 유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의 당시 적용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벌을 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사,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하여 불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명예와 신망에 대한 침해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함)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소추인 경우에는 실효된다.

제1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성년된 남녀는 종족, 국적 혹은 종교로 인한 하등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성년의 남녀는 결혼기간 중 또는 그 해소에 있어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배우자가 될 의사를 가진 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되어야 한다.
3.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기본적인 단위단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재산을 박탈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혹은 신앙을 개변할 자유와 단독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나 또는 공적으로나 혹은 사적으로나 자기가 믿는 종교나 신앙을 전도하고 실천하여 예배하고 신봉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누구를 막론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직접으로 혹은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나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민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하여 또 비밀 혹은 그에 유사한 자유투표 방법에 의한 정기적인 정당한 선거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또는 각 국가의 기구와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 방법으로써 보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당한 노동시간의 제한과 유보수의 정기적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직, 질병, 배우자의 상실, 노쇠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성과 유약은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이도는 적출이고 아님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기에 있어서는 무료이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분위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개발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경이념을 견고히 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종족과 종교단체 사이에 이해와 관용성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사업을 조장시켜야 한다.
3. 부모는 그 자녀에게 과합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관여하며 예술을 감상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제작한 과학상, 문학상 혹은 예술상 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인격과 자유롭고 또 완전한 발달이 그 속에 있어서만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2. 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심분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 또는 도덕, 공공질서 및 민주사회의 일반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제정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서만 제한을 받는다.
3. 이 권리 및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에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 인권헌장 1998. 12. 9 선포

| 전문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권리선언

UN총회 결의 3447(제30차) 1975. 12. 9 채택

1.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본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누린다. 이들의 권리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의 의견, 국가 또는 사회적 신분, 빈부, 출생, 장애인 자신이나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이나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3.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들 장애의 원인, 특질,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맨 먼저 (First and foremost) 가능한 통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제 7조는 정신지체인의 이와 같은 권리의 어떠한 제한이나 배제에도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그들이 자립(Self-reliant)할 수 있도록 계획된 여러 시책을 누릴 자격이 있다.
6. 장애인은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의료적,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 및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경제·사회계획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들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도록 할 자격이 있다.
9. 장애인은 그들 가족이나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모든 사회적, 창조적 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그의 주거와 관련하여, 그 상태로 인하여 그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그 주거상태개선을 요구할 경우 이외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만일 장애인이 특수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할 때에도 그 곳의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동연령 사람의 통상적 생활과 가능한 유사한 것이라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 모욕적 또는 천박한 모든 착취와 모든 규칙, 그리고 모든 취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 장애인은 그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인 원조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 대해 사법적인 소송절차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적용되는 법적 수속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2.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효하게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본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지하여야 한다.

● 편집후기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경아 씨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길고 지리한 싸움이 이제서야 일단락을 맺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서, 성명서, 거리시위, 항의방문, 재판 등 지난 2년간의 시간동안 우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최초로 교도소, 구치소 내에 수감 중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요구를 하였습니.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등의 공권력으로부터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역 편의시설 체험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권에 제한받지 않고 한 사람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관련 용어 올바르게 알기" 캠페인을 펼쳐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책 한 권 만들어 낸 것으로 끝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옥례를 비롯한 최경아 사망사건의 가담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비굴하고 추잡하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도소, 구치소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을 고발했지만, 올바르게 시정되기까지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런지 알 수 없습니다. 끝이 언제일지도 모를 싸움이지만 우리는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동등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인권보고서를 내는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돈명스님(거조암 주지), 돈관스님(불교방송 총괄국장), 혜휴스님(중앙암 주지), 협회후원회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예리한 시각으로 보도를 해주신 이재운 기자, 전영 기자(이상 영남일보), 최경철 기자, 최재왕 기자(이상 매일신문) 등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자신들에게 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최경아 사망사

건과 관련한 증언을 해 준 봉덕동 주민 여러분, 의료 자문을 해 주신 박언휘 교수, 법률자문을 해 주신 임철 변호사께도 감사할 드립니다. 교도소, 구치소의 장애인 인권 조사를 위해 수고 하신 이원형 국회의원, 이창룡 님(박창달 국회의원 비서)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아 사망사건'을 연극과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준비중인 표원섭 교수(가야대학교 연극영화학과)께 격려와 지지를 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 15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노 세 중
대구장애인인권위원회 간사 이 현 석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999년 발생한 여성장애인 최경아 사망사건에 기초해 연극과 영화를 제작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화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고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자 합니다. 영화제작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울곧게 살아가기 위한 밝은 빛을 제시할 본 영화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161-05-141535-002

예 금 주 · (사)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담당 : 이현석 간사)

연 락 처 · (053)954-0170

대구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인권보고서

인 쇄 · 2002년 1월 16일

발 행 · 2002년 1월 18일

발행처 ·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발행인 · 윤수동

편집인 · 노세중

제작처 · 보문기획 (T.426-7829)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1810-3

Tel. 053)954-0170-1

Fax. 053)956-4108

홈페이지 www.domi.or.kr

- 비매품 -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 이사들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